

2019-2학기 외국인 신·편입 특별전형

# 모 집 요 강



**강남대학교**

<http://www.kangnam.ac.kr>

## 창학이념

강남대학교는 기독교정신과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진리·자유·평등·평화·복지를 추구하며 경천애인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 교훈

敬 天 愛 人

## 교육목적

강남대학교는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인격을 연마하여 민족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 교육목표

- 교양인 양성
- 전문인 양성
- 봉사인 양성



## CONTENTS

1. 모집단위 및 인원 .....	04
2. 지원자격 .....	05
3. 전형일정 .....	05
4. 전형방법 .....	05
5. 전형료 .....	05
6. 지원방법 및 절차 .....	06
7. 제출서류 .....	06
8. 학사안내 .....	07
9. 지원자 유의사항 .....	08

### 부록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안내사항 .....	09
1. 등록금 안내 .....	09
2. 장학 안내 .....	09
3. 기숙사(숙소) 안내 .....	09
4. 외국인 보험 안내 .....	10
5. 시간제 취업 안내 .....	10
6. 기타 안내 .....	11
7. 아포스티유 안내 .....	11
8. 캠퍼스조감도 .....	13
9. 교통 안내 .....	13

## 1. 모집단위 및 인원

### ※ 신·편입학

※ 전공별 상황에 따라 모집인원을 제한 할 수 있음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모집정원
인문사회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	약간명
		사회사업학전공	
사회서비스정책학전공			
예체능		실버산업학과	
		복지융합인재학부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전공	
	미술문화복지전공		
스포츠복지전공			
인문사회	경영관리대학	글로벌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제세무학과	
공공인재학과			
인문사회	글로벌인재대학	기독교학과	
		한영문화컨텐츠학과	
예체능		글로벌학부	
		국제지역학전공	
		중국지역학전공	
음악학과			
공학	ICT건설복지융합대학	소프트웨어응용학부	
		소프트웨어전공	
		가상현실전공	
		IoT전자공학과	
		산업데이터사이언스학부	
		산업경영공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부동산건설학부	
부동산학전공			
도시건축융합공학전공			

## 2. 지원자격

\* 개정국적법(2010.05.01)에 따라, 복수국적자인 외국인은 본교 외국인 신입입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가. 신입생 특별전형

※ 초·중등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

- 1)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학생

### 나. 편입생 특별전형

※ 신입생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

- 1) 정규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2) 정규 4년제 대학교 교육과정 2년 이상 수료한 자(3학년 편입자격 인정)
- 3)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다. 어학능력 구비조건

※ 상기 신입생 또는 편입생 특별전형 자격에 부합하며,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

- 1) 공인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 2) 강남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KNKPT) 3급 이상 취득자
- 3) 타 대학(4년제)어학교육원 취득 등급이 강남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 3급에 준하는 자

※ TOPIK 4급을 취득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함

## 3.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입학원서접수	2019.05.20(월) ~ 06.07(금) 09:30 ~ 17:00	- 본교 대외교류센터 - 아시아사무소 (중국내 신청자에 한함)
서류제출	2019.05.20.(월) ~ 06.14(금) 09:30 ~ 17:00	- 본교 대외교류센터 - 아시아사무소 (중국내 신청자에 한함)
합격자 발표	2019.07.26.(금) (예정)	개별통지
등록기간	2019.08.05(월) ~ 08.16(금)	본교 국민은행(살롱관 1층)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및 비자 변경	2019.08.19.(월) ~ 08.30(금)	- 비자변경 전 출국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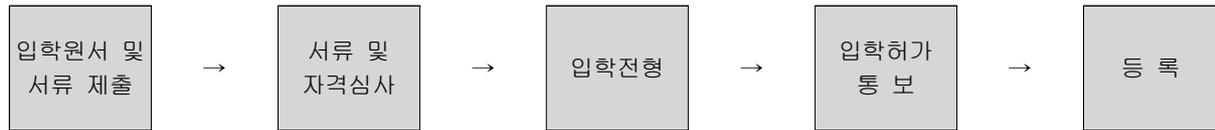
## 4. 전형방법

※ 서류심사(100%) - 수학능력, 어학능력, 학업계획서등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5. 전형료

※ 전형료 없음

## 6. 지원방법 및 절차



## 7.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명	비 고	
공 통	입학원서(칼라사진 2매 / 3.5cm X 4.5cm)	본교 소정 양식	
	학업계획서(국문)		
	학력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호구부(호적등본) 1부	중국에 한함	원본(본인, 부, 모)
	친족(가족)관계증명(동일호구가 아닐시)		한글 공증본 또는 영문 공증본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여권사본 1부		
	외국국적증명서 사본		본인, 부, 모 (신분증 사본)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미화 \$20,000에 상응하는 은행 예금잔고증명서		6개월 이내의 서류만 가능
	출입국 사실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앞, 뒷면 복사)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함
	1)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성적증명서 (유효기간(2년) 내 성적표) 2) 강남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KNKPT) 3급 이상 취득자 3) 타 대학(4년제) 어학교육원 취득 등급이 강남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KNKPT) 3급에 준하는 어학능력 증서		택 1 원본(소지자에 한함)
신 입	고등학교 전체 학년 영문 성적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본 서류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 이하 택1 하여 처리 필요 - 국적이 아포스티유 회원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 처리 - 국적이 중국인 경우: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 인증센터 발행 학위 인증 보고서 제출	
편 입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졸업(예정 또는 재학)증명서	- 주한 출신학교 소재국 공관 또는 출신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처리	
	고등학교 전체 학년 영문 성적증명서 1부	-	
	대학 영문 성적증명서 각 1부	-	
	출신대학 교수추천서 1부	-	

### ※ 서류 제출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강남대학교 본관 116호 대외교류센터(우편번호 16979)

Tel : 82-31-280-3611

- 中国 山东省 临沂市 临沂大学 中韩学院 C208 临沂 世宗学堂内 中国办事处 (邮编276005)

- 1) 졸업장, 호구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원본을 제외한 기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2)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번역 공증 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중국내 요구 일부서류 제외).
- 3)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경우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는 **한글공증본** 및 **아포스티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아포스티유 협약 확인서 - 12페이지 참조)
- 4) 중국인 신청자는 **중국교육부 발행 학력인증보고서**가 필수입니다.

인증기관: CHSI 중국고등교육 학생정보망([www.chsi.com.cn](http://www.chsi.com.cn))

-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는 서류심사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6) 제출된 서류상의 이름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동일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상기 제출서류 외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력인증관련 아포스티유 확인서, 공자아카데미 학력확인서, 중국교육부학력조회 보고서등

## 8. 학사안내

### 가. 학부제 / 학과제

- 학부제란 “공통된 학문의 영역 속에서 두 개 이상의 전공을 두어 기초에서 세분화된 전공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체제”를 말합니다. 학부 입학생들은 학부 내의 전공 중에서 자유로이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졸업 학기에 이수한 학점을 심사하여 전공을 확정하게 됩니다.
- 학과제는 1개의 전공 형태인 학과 중심의 교육체제입니다.

### 나. 제1전공

소속 학부(과) 내에서 1개 전공을 선택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을 말합니다.

### 다. 심화전공

제1전공 교육과정에서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일정 학점이상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라. 다전공

제1전공 이외 동일 학부내 타전공 또는 타 학부(과)에 개설된 전공을 소정 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전공은 각 항목과 같습니다.

#### 1) 복수전공

제1전공 이외에 소속 학부(과) 내 다른 전공 또는 타 학부(과)에 개설된 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 할 경우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 인정하는 전공을 말합니다.

#### 2) 부전공

제1전공 이외에 소속 학부(과) 내 다른 전공 또는 타 학부(과)에 개설된 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하는 전공을 말합니다.

#### 3) 연계전공

제1전공 이외에 본교에서 정한 2개 이상의 학부(과)의 전공이 연계하여 새로운 영역을 이수하게 하여 인정하는 전공을 말합니다. (“교양 및 전공이수에 관한 규정” 참조)

#### 4) 자율설계전공

제1전공 이외에 학생 개인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합니다.

### 마. 주·야간 교차수강

학기당 9학점 이내에서 주·야간 교차수강을 허용합니다.

## 바. 전부(과) 제도

전부(과) 제도는 학생의 적성, 흥미, 소질에 맞는 새로운 전공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3학기 이상 6학기 이내 진급대상자로서 소정의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체능계열로의 전부(과)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9. 지원자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나. 월반과 조기 졸업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 입학원서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합격자 발표 시 연락두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지원 자격 부적격자가 반환기간(개별통지)까지 찾아가지 않은 서류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마. 입학전형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바.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등록금 분할 납부를 제한합니다.
- 사.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일반휴학은 불가합니다.
- 아. 본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교 기숙사에 거주하여야만 합니다.**
- 자. 본 모집요강에 기재된 관련 비용은 지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사전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차. 본 모집요강 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타. 기타 사항은 본교 **대외교류센터(+82-31-280-3611)**로 문의 바랍니다.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안내사항

### 1. 등록금 안내

가. 본과(첫학기)

(단위: 원)

계 열		입학금	수업료(신/편입)
			1,2,3,4 학년
인문·사회 계열		607,000	3,403,000
자연·예체능 계열	체능계열 (사회체육학과, 복지융합인재학부 스포츠복지전공)	607,000	3,997,000
	공학계열		4,319,000
	예능계열		4,563,000

\* 상기 금액은 2019년 2월 기준으로 추후 변동 가능함

### 2. 장학 안내

장학금 구분		지급기준		장학금 지급액
		수혜자격	기준 성적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A급	외국인 재학생의 성적상위 10% 이내	3.0 이상	학년수석 상당액(67%)
	B급	외국인 재학생의 성적상위 30% 이내		학년우수 상당액(47%)
	C급	외국인 재학생의 성적상위 70% 이내		수업료 30%
	D급	외국인 신·편입생	첫 학기	수업료 47%
	E급	외국인 신·편입생 및 재학생	2.5 이상	기숙사비 25%

\* 성적장학금 신청 가능 취득학점 : 1, 2, 3학년 - 16학점이상, 4학년 - 12학점이상 대상자 중 석차순으로 차등 지급함

\* 학칙에 따라 변동 적용 될 수 있음

### 3. 기숙사(숙소) 안내

가. 외국인 유학생은 기숙사에 우선 배정합니다.

나. 외국인 신편입유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본교 기숙사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시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단위: 원)

숙소 종류	수 량	방 유형	비용(한학기)	부대시설 및 식사
심전1관	남 220	4인 1실	632,000	- 침대, 옷장, 책상, 의자 - 헬스장, 샤워실, 식당, 휴게실, 세탁실, TV/VTR 시청실, 매점, - 각 방 LAN설치
	여 244	4인 1실		
심전2관	남 135	2인 1실	1,162,000	
	여 195	2인 1실		

\* 상기 금액은 2019년 2월 기준으로 추후 변동 가능함

#### 4. 외국인 보험가입 안내

입학자는 학교에서 지정한 보험사에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5. 시간제 취업 안내

외국인유학생은 재학 중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이 일부 허용됩니다. 본교 재학 중 시간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취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허가 없이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한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반드시 대외교류센터를 방문하여 취업허가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b>취업허용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li> <li>- 시간제 취업을 위한 한국어 능력* 최소 요건 규정 신설</li> </ul>					
<b>취업허용시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최장 1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간제취업 장소는 2곳으로 한정</li> <li>- 학년 및 TOPIK 소지유무별 취업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음</li> </ul>					
	<b>유형</b>	<b>학년</b>	<b>한국어수준</b>		<b>허용시간(인증대기준)</b>	
				<b>주중</b>	<b>주말</b>	
	학사과정	1~2학년	TOPIK 3급	X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3~4학년		TOPIK 4급	X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b>취업허용 및 제한분야</b>	<p>① 취업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li> <li>-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 단, 각 분야의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p>② 취업제한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대학이 제출하는 '시간제취업확인서' 상에 기재된 업종이 제조업 또는 건설업이 아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li> <li>ii) 단,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 능력 토픽 4급을 소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li> </ul> </li> <li>-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 ② 참조)에 해당하는 지 여부</li> <li>-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 및 시행령 21조의 영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 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li> </ul> </li> </ul>					
	<b>제 출 서 류</b>					
<p>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p> <p>②수수료(면제)</p> <p>: 대학에서 확인서를 제출하는 시간제취업허가의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되나, 개별적으로 전문인력 분야에 별도로 자격외활동을 신청 할 경우 규칙 72조에 따라 수수료(2만원)를 징구하게 됨</p> <p>③시간제취업 확인서</p> <p>④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p>						

	⑤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토픽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⑥사업자등록증 사본 ⑦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상의 고용주와 고용계약서상의 고용주가 상이한 파견근로사실이 다수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18.3.1) ⑧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작성) ⑨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복합직종인 경우 고용주가 작성(서식 별첨)
신청 방법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학의 유학생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제한 대상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90% 이하이거나,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2.0)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처	본교 본관 1층 대외교류센터 (+82-31-280-3422)

## 6. 기타 안내

- 1)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유학생에 대하여는 2주 이내에 관할 법무부 외국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내용	신고주체	
	학교	학생
① 재학 중 매 학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한 경우	√	
② 자퇴, 제적, 졸업, 행방불명, 기타사유로 유학 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출결사항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유학생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조치를 취한 경우	√	
④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⑤ 체류지(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
⑥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인해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

-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리하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① 한국어과정 이수자로서 1년 이내에 한국어과정 초급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②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한 경우
- ③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경우
- ④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 ⑤ 전 과목 과락을 한 경우
- ⑥ 타 대학에 입학한 경우
- ⑦ 퇴학처분을 받은 자
- ⑧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7. 아포스티유 협약 확인서 안내

- 1)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

(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입니다.

2)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방법

가. 외국에서 재학·졸업하였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발급 받은 후,  
나. 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 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은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국이 아닌 경우 기존처럼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해당국가의 외교·영사기관에서 “학력인정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대입 원서 접수 시 외국학교 발행 각종 증명서와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재외교육기관확인서,  
영사확인)를 함께 제출합니다.

라.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대상

- 국·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중 해당국 공증기관이 공증한 문서

※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한글)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3)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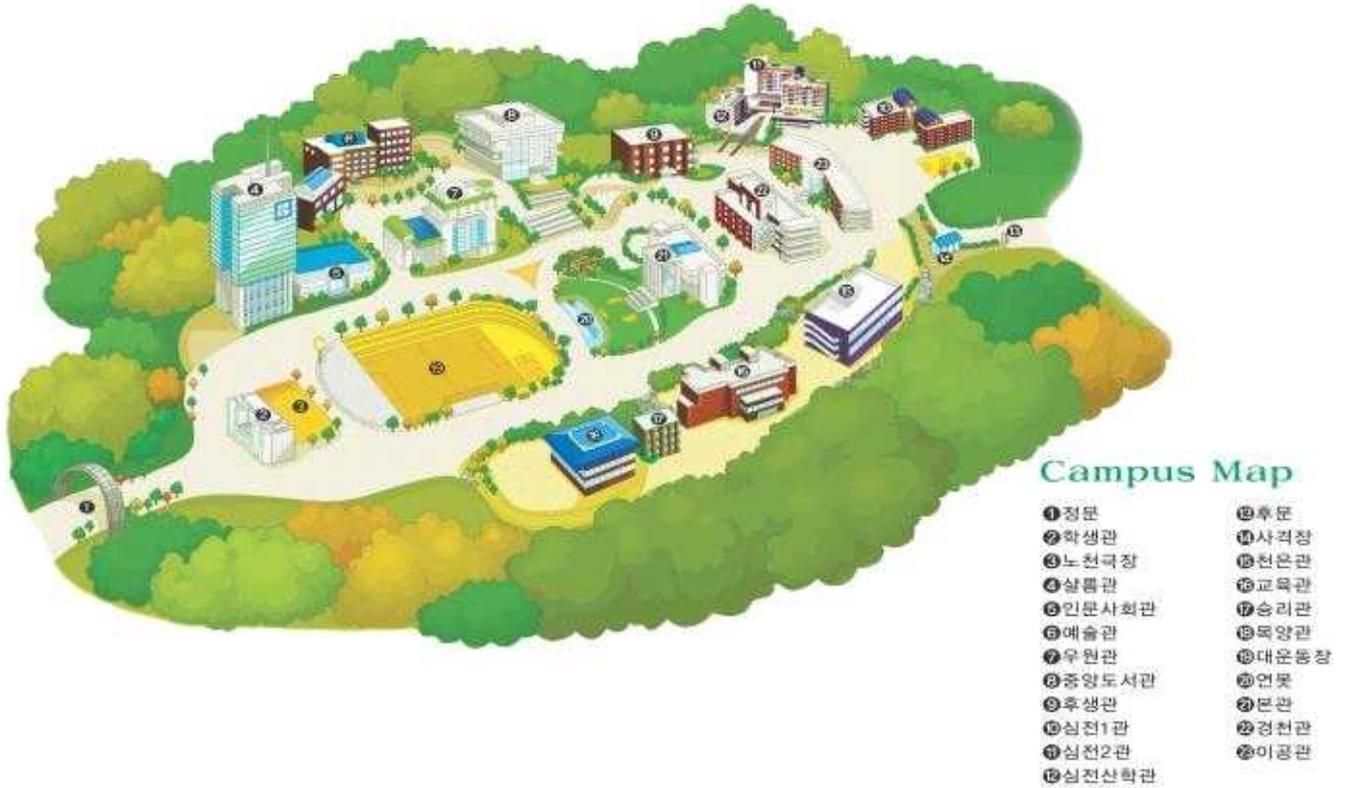
※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한 자료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인(www.0404.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전용 상담전화(02-2100-7500) 또는 영사콜 센터  
(02-3210-04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17)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일본, 중국일부**(마카오?홍콩), 쿡제도, 통가, 피지, 한국, 타지키스탄
유럽 (52)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미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1)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 (29)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아프리카 (12)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4)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출처 및 편집: 외교부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18.05.08. 기준)

## 8. 캠퍼스 조감도



## 9. 교통안내

